

을 통하여 정책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참여는 정책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셋째로, 연합회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활동은 순응과 불응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집행에의 순응이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회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법규를 해설하고, 변경된 법규를 전달하여 회원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이 순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연합회 활동의 대부분은 순응을 위한 활동으로 일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응은 흔하지 않으며 환경정책의 집행이 피규제자인 환경관리인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된 경우 법정투쟁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환경정책이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적으로 강화되어만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피규제자로서의 환경관리인 연합회는 대체적으로 정책에 순응하면서도 정책형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다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특징이다.

배출시설의 정의와 허가대상 범위

(첫번째)

이 상 덕

(원주환경지청지도과)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본회보 '88. 1월호 50쪽 참고) 환경보전법 해설을 실는 관례로 기획연재 「환경관리인 실무상담」은 당분간 쉽니다.

-편집자주-

서 론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87. 3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내용 중에는 폐수배출 시설의 대상업종이 종전 24개 업종 163개 시설에서 26개 업종 158개 시설로 조정되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개정내용 중에는 조립금속이 가공금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밀시험시설과 도장시설이 폐수배출 시설로 신설되었고 배금속광물 제조시설에서는 종전의 연마시설이 삭제되고 연삭시설과 수냉식 절단시설 등이 추가 신설되는 등 현실화를 하였는바, 일선 배출시설 관리책임자들은 소속 기업체의 배출시설 중에서

새로 변경허가와 신고를 하여야 할 시설이 있다면 허가기관(시·도 또는 환경지청)으로 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선 환경인의 이해를 돕고자 새로 개정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총배출시설 158개 항목 중 업종에 따라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한 76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정의와 규모에 대하여 해설하고자 한다.

개정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새로 신설된 업종과 배출 시설의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각 업종에 따른 배출시설의 정의와 허가대상 규모는 「표 2」와 같다.

〈표-1〉 폐수배출시설 신설 내용

업종	배출시설	시설합계	비고
1. 산업용화학제 품제조시설	• 혼합시설	• 용적 1m ³ 이상	신설
2. 기타 화학제 품제조시설	• 혼합시설	• 용적 1m ³ 이상	"
3. 가공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시설	• 도장시설(습식 포집) • 수밀시험시설	• 용적 5m ³ 이상 또 는 면적 20m ² 이상 • 용적 5m ³ 이상 또는 면적 10m ²	"
4. 종이 및 담배 제조시설	• 순환식조화시설 • 습집시설 • 침향시설 • 향료조제시설	• 용적 5m ³ 이상 • 용적 5m ³ 이상 • 용적 0.5m ³ 이상 • 면적 20m ² 이상	"
5.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시설	• 연삭시설 • 수냉식절단시설	• 동력 5HP 이상 • 동력 5HP 이상	"
6. 인쇄 및 출판 시설	• 연마시설 • 도금시설	• 동력 3HP 이상 • 용적 0.1m ³ 이상	신설
7. 폐수처리시설	• 폐수저장시설	• 용적 1m ³ 이상	"
8. 공통시설	• 정수시설	• 정수능력 100m ³ / 일 이상	"
9. 기타시설	• 특정시설 • 일반시설	• 특정유해물질 및 금속이 포함된 폐수배 출량이 0.1m ³ /시간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 장의 시설 • 특정유해물질 및 중 금속이 포함되지 아니 한 폐수를 배출허용 기 준을 초과하여 1m ³ /시 간 이상을 배출하는 사 업장의 시설	업종 "1- 26" 외 의 포 합시설

〈표 2 배출시설의 정의 및 허가대상규모〉

배출시설	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
• 세척시설 (Washing facilities)	• 용기, 원료, 제품제조시설을 물로 씻거나 제조 과정에서 바닥에 흘러나온 오염물질을 씻는 시설로서 용적합계가 1m ³ 이상 또는 용수시설의 합계가 0.5m ³ /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반응시설 (Chemical reaction facilities)	• 2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합하여 화학적 변화(반응)를 일으키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배출시설	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
• 분해시설 (Decomposing facilities)	• 화합물질을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물질로 나누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분리시설 (Separating facilities)	• 어떤 혼합물질 용액을 물리적(침전, 결정, 승화 등)으로 나누어 분리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이거나 또는 동력합계 3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혼합시설 (Mixing facilities)	• 각기 다른 특성의 물질을 기계적으로 한데 뒤섞어서 혼합물을 만드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을 말한다.
• 여과시설 (Filtering facilities)	• 여과기를 이용하여 용액 중에 부유물질이나 이물질 걸러서 제거하는 시설로 용적합계가 2m ³ 이상이거나 또는 동력합계 3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농축시설 (Concentration facilities)	• 하나 이상의 물질을 진하게 영기어 바짝 졸아 들게 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2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정제시설 (Refining facilities)	• 조제품을 다시 가공하여 더 정밀하게 만드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회수시설 (Recycling facilities)	• 액체상의 용질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추출시설 (Extracting facilities)	• 용매를 사용하여 고체 또는 액체에서 어떤 물질을 뽑아내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증류시설 (Distilling facilities)	• 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증기를 냉각시켜 다시 액화하여 분리 또는 정제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염색시설 (Dyeing facilities)	• 가죽에 염색을 하는 시설로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유제시설 (Soot process-ing facilities)	• 가죽을 알람(Alum), 크롬, 탄닌산 등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하는 시설로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자숙시설 (Automatic cooking facilities)	• 원료 및 제품을 물에 담그어 삶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수세식탈취시설 (Aquatic deodor-ing facilities)	• 원료 및 제품을 물속에 담그거나 물을 뿌리면서 냄새를 빼어 없애는 시설로 용적합계 2m ³ 이상이거나 또는 용수합계 1m ³ /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탈수시설 (Dehydrating facilities)	• 물질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압착시설 (Compressing facilities)	• 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즙액을 짜내거나 물질의 밀도를 크게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2m ³ 이상이거나 또는 동력합계 3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도살시설 (Slaughtering facilities)	• 소, 돼지, 닭, 양, 염소 등의 가죽을 도살, 해체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면적합계 2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배출시설	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백시설 (Decoloring facilities) 마쇄시설 (Grinding and pulverizing facilities) 증기시설 (Steaming facilities) 증해시설 (Steam decomposing facilities) 쇄목기시설 (Wood crushing facilities) 초지시설 (Raw paper mfg facilities) 세로판제막시설 (Cellophane film mfg. facilities) 전해시설 (Electrolyzing facilities) 산알카리처리시설 (Acid or alkali treatment facilities) 수세식파쇄시설 (Flush Pulverizing facilities) 발효시설 (Fermentation facilities) 검화시설 (Saponicating facilities) 압연시설 	<p>실내면적 합계라 함은 작업실의 실내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약품을 사용, 탈색하여 회계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원료를 습식으로 갈아서 분쇄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이거나 또는 동력합계 3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원료 및 제품을 증기로 쪄는 시설로 용적합계 2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나무, 님마 및 기타 섬유로부터 유기물을 제거하여 종이제조에 필요한 섬유질만 얻기 위하여 알카리용액으로 해서 증기로 쪄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 시설을 말한다. 회전지석에 물을 부으면서 제지용 목재를 납작하게 눌러 마쇄작용으로 목질을 이해하고 섬유를 분쇄하는 시설로 동력합계 3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용액상태의 섬유질을 평면의 종이형태로 만드는 시설로 생산능력합계 50kg/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생산능력합계 50kg/시간 이상이라 함은 초지기 각각의 생산능력을 합하여 시간당 50kg 이상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비스코스를 산 또는 염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밀어 넣어서 판자를 만드는 시설로 생산능력 합계 100kg/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생산능력합계 100kg/시간 이상이라 함은 세로판 제막기 각각의 생산능력을 합하여 시간당 100kg 이상의 판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해질을 수용액에 전류를 통하여 액중의 양, 음이온이 각각 양극, 음극에 모여 전기 생성물이 형성되도록 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2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산이나 알카리용액에 어떤 제품을 표면처리하기 위하여 담구거나 원료 및 제품을 중화시키는 시설로 용적합계 2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고체상태의 물질을 넣거나 고체상태의 물질에 물을 부으면서 깨뜨려 부스러뜨리는 시설로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효모류나 세균류 따위의 미생물에 의해 유기 화합물이 분해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5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유유지를 가성소다 또는 알카리로 가수분해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회전하는 압연기의 롤 사이에 상온이나 고온

배출시설	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lling facilities) 담금질시설 (Hardening facilities) 도금시설 (Gilding facilities) 표면처리시설 (Surface processing facilities) 도장시설 수밀시험 시설 원유저장시설 (Raw petroleum storage facilities) 탈황시설 (Desulfurizing facilities) 탈염시설 (Desalinizing facilities) 침지시설 (Immersing facilities) 석회지 시설 (Lime tank facilities) 판매장시설 (Sale facilities) 세모시설 (Wool washing facilities) 염색시설 (Dyeing facilities) 	<p>으로 가열한 금속제품을 넣어서 막대거나 널모양으로 늘리는 시설로 동력합계 30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을 고온으로 담구었다가 물에 담그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금속의 표면에 금속따위를 얇게 올리는 시설로 용적합계 0.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산화부식 등의 화학작용을 막기 위해 금속의 표면을 미리 산화 또는 환원처리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금속의 기계, 기구, 제품 등의 표면에 분사장치로 페인트 등을 도포하는 시설로서 용적합계 5m³ 이상 또는 면적 20m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기계, 기구 등 금속제품을 불탱크 속에 담구어 제품의 성능, 품질을 관찰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5m³ 이상 또는 면적 10m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용적합계 10,000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유류 중에 함유된 유황 및 그 함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1기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원유 중의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로 1기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건조된 원료를 물에 담구어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설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원피의 단백질, 털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석회, 유화소다 등이 용해된 물에 담구는 시설로서 용적합계 1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판매에 사용되는 시설로 면적합계 700m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면적합계라 함은 저장시설, 진열 및 판매시설이 설치된 건물바닥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 원모(주로 양모)를 세제용액에서 세척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2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섬유 및 섬유제품을 염료를 용해한 용액 속에 넣어 염색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2m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